

국방부령

방 위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전력정책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수행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산업체 등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(인증 갱신 포함)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음.

나. 그에 따라,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갱신 신청 심사를 인증 기한 만료 전 완료해야 함에도 현장 심사가 제한되어 심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됨.

다. 이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재난, 천재·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(안 제 2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전단 중 “신청(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)”을 “신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가재난, 천재·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품질경영체제인증) ①·② (생략)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(<u>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</u>)를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 <u>증의 갱신 신청은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<신설></u>	제25조(품질경영체제인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신 <u>청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. < <u>후단 삭제</u> >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가재난, 천재·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. ⑤·⑥ (<u>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</u>)
④·⑤ (생략)	